라클라체자이드파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XI | DE'FINE

1. 공급개요

-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-220번지 일대[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]
- 공급규모 : 아파트 B4 ~ 28F, 14개동, 총 1,499세대 중 일반분양 369세대
- 입주시기 : 2028년 11월 예정(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.)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(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이내))

주택형	세대수	국가 유공자 등	장기복무 제대군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장애인			중소기업 근로자	합계
				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경기도		
59A	132	2 (10)	2 (10)	3 (15)	2 (10)	1 (5)	1 (5)	2 (10)	13 (65)
59B	9	-	-	-	-	-	-	-	-
59C	28	-	-	-	1 (5)	-	-	-	1 (5)
84A	65	1 (5)	1 (5)	1 (5)	1 (5)	1 (5)	1 (5)	2 (10)	8 (40)
84B	91	1 (5)	1 (5)	2 (10)	2 (10)	1 (5)	1 (5)	1 (5)	9 (45)
84C	20	-	-	-	-	-	-	-	-
106A	24	해당없음							
합계	369	4 (20)	4 (20)	6 (30)	6 (30)	3 (15)	3 (15)	5 (25)	31 (155)

※ 추천대상자 / (예비대상자)

추천대상자 : 기관에서 "당첨자"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신청으로 "당첨자"가 되는 자

예비대상자 : 기관에서 "예비자"로 선정 및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"당첨자"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

-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(예비대상자 포함)까지 가능하며,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-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,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(www.applyhome.co.kr)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합니다.)

구분	분양일정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26.04.03. (금)예정	• 일간신문 공고 및 자이 홈페이지(http://xi.co.kr/lxd) • 분양문의 : 1833-2478 • 견본주택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(대치동, 자이갤러리 1층)
특별공급 청약	2026.04.13. (월)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llyhome.co.kr) / 09:00~17:30 • 견본주택 방문접수(10:00~14:00까지 / 만 65세 이상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)
당첨자 발표	2026.04.22. (수)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llyhome.co.kr)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현재 입주자모집 승인 전으로 공급금액 및 분양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입주자모집 승인일에 따라 분양일정(특별공급 청약접수일, 당첨자발표일 등)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)
- 본 청약안내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2025.10.31.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,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청약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기관추천 특별공급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이내

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
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

국가유공자 등	장기복무 제대 군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장애인	중소기업 근로자
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	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	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	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
국가유공자 /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	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「군인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장기복무군인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	「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」 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

5.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

- **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**하여야 합니다.
  - 추천대상자 :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
  - 예비대상자 :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
- **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**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해 청약 신청**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)
- **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**합니다.

6. 당첨자 선정방법

당첨자 선정기준[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]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관부서

구분	해당기관	연락처
국가유공자 등	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	02-3019-2369
장기복무 제대군인		
10년 이상 복무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02-2225-6492
장애인	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	02-2133-9611
	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	032-440-2966
	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	031-8008-4323
중소기업 근로자	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	02-2110-6323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클라체자이드파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X1 | DE'FINE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

공급기준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**무주택구성원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**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• **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** 또는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. •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 • **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**합니다. •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(1회 특별공급 간주)로 판단됩니다. •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무주택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– **기관추천**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: **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** •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·비속까지 포함합니다. **[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]** – '세대'란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'세대원'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가. **주택공급신청자** 나. **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** 다. **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** –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) 라. **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같음)** –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) 마. **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** (예) 전혼자녀 등 – '무주택세대구성원' 이란 **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**
청약통장 자격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**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 제외)**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자 (전용 85㎡ 주택형에 한 함.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입주자저축 예치금액	서울특별시 (특별시 및 부산광역시)	인천광역시 (그 밖의 광역시)	경기도 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 이상	250만원 이상	200만원 이상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 이상	700만원 이상	400만원 이상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 확대(2024.12.18. 개정)

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

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)에 해당하지 않는 것 :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 6천만원) 이하일 것

나.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(수도권은 5억원)이하일 것

1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

2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)에 해당하지 않는 것

3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

조항	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	주거전용면적	수도권	비수도권
제53조 제9호 가목	아파트(도시형생활주택 제외)	60㎡ 이하	1억 6천만원	1억원
제53조 제9호 나목	단독주택	85㎡ 이하	5억원	3억원
	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			
	도시형생활주택			

■ **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**(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견본주택 청약 접수 시 제출)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본인	–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(www.applyhome.co.kr)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: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의 경우 제외 ※ 인터넷청약(청약 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주민등록표등본		–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	–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성명/관계 등을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	–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		–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–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, 제출처 : 라클라체자이드파인
	신분증		–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추가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–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대리인 접수 시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–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, 제출처 : 라클라체자이드파인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–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-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-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(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정보취약계층)는 청약 신청 시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)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,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- 인감증명서는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발급본도 제출 가능합니다.
-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

- 2018.05.04.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(견본주택)가 가능합니다.
-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)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방문접수(견본주택)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을 무효로 처리(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)하고,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.
-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,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-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.)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,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,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.
-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(동·호수 추첨 및 계약)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.
-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동·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.(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일(동·호수 추첨 및 계약)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.) 또한,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·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
■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및 기준

-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
-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·호수를 공개한 후 동·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.(동·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,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배정됩니다.)
-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·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클라체자이드파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DEFINE

■ 단지 위치도_[현장주소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-220번지 일대]

■ 견본주택 위치도 및 분양문의

노량진뉴타운의 첫번째

라클라체자이드파인

분양문의 : 1833-2478

자이갤러리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, 1층

지하철 이용 시

-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
-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

버스 이용 시

- 간선 343, 401
- 지선 4318, 4319
- 일반 11-3
- 직행 500-2, 9407, 9507, 9507, 500-2N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